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br>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2 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 결일자
O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2.1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 결(수정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제 77 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나.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 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도지사는 구내식당 • 매점 • 의무실 • 체력단련실 • 콘도 등의 직 원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직 장동호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III．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기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bigcirc$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안 제 1 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렁으로 인용한 「지방 공무원법」 제77조3）의 규정은 본 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 는 점을 감안할 때，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됨．

○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고，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것에 비해，자치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없이「지방자치법」 제 22 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9조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지방자치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라고 판단됨．

3）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4）제 22 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1）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라．（생략）
마．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따라서，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 방공무원법」 제 77 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임．

## IV．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토론요지 ：＂생략＂

## VI．수정안 요지

## 1．수정이유

가．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 법」제 9 조에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 22 조에 자치사무는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바，

나．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제 77 조의 규정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은「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근거할 수 있으므로

다．안 제 1 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 77 조를 인용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입 법기술상 적합함．

## 2．수정주요내용

○ 안 제 1 조 본문 중＂「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붙임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07．12． 14.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 수정이유

가．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 법」제 9 조에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 22 조에 자치사무는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바，

나．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제 77 조의 규정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근거할 수 있으므로

다．안 제 1 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 77 조를 인용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함．

## 수정주요내용

○ 안 제1조 본문 중＂「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함．

## 충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본문 중"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 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 청북도"를"이 조례는 충청북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으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의안 <br> 번호 | 171 |
| :--- | :--- |

제출연월일 ：2007년 월 일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 1．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2．주요니용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 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구내식당•매점•의무실•체력단련실•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안 제7조）
○ 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 3．의안전문 ：붙임

## 4．관계법령 발췌 ：붙임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1)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 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1)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2)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1)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 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 - 구내식당 • 매점 • 예식장 • 자동판매기
2. 의무실 - 체럭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 원 - 콘도 등
(2)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7 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square$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